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종이 소식지의 무분별한 과다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 대비 발행 부수 상한선 (65%)을 설정하고, 정보 취약계층 중심의 효율적인 배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소식지 발행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 광고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 목적 등의 예외 단서와 광고 면적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며,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및 공익단체를 위한 광고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이 소식지 발행 부수를 전체 세대수의 65% 이내로 제한하고, 실수요자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 나. 소식지 발행 예산 경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료 광고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의 예외 단서를 신설하고, 공익·지역경제 활성화 광고 면적 비율을 전체의 10% 이상 20% 이하로 지정함(안 제6조)
- 다. 국가·지자체,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광고료 면제 또는 50% 범위 내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ycr7607@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문 영 희 의원 외 6명

(손주하 의원 강윤희 의원 양은미 의원

김득천 의원 강현미 의원 최윤성 의원)

1. 제안이유

종이 소식지의 무분별한 과다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 대비 발행 부수 상한선(65%)을 설정하고, 정보 취약계층 중심의 효율적인 배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소식지 발행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 광고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 목적 등의 예외 단서와 광고 면적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며,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및 공익단체를 위한 광고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 소식지 발행 부수를 전체 세대수의 65% 이내로 제한하고, 실수요자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나. 소식지 발행 예산 경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료 광고 게재를 원칙으

로 하되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의 예외 단서를 신설하고, 공익·지역경제 활성화 광고 면적 비율을 전체의 10% 이상 20% 이하로 지정함(안 제6조)

다. 국가·지자체,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광고료 면제 또는 50% 범위 내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격과 발행 부수는”을 “규격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소식지의 종이 지면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정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중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수요자 신청에 의한 배부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우선하여 배부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광고 중 공익광고, 구정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면적은 소식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광고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게재하는 광고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광고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공익단체의 광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부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발행하는 소식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되어 이행 중인 소식지 인쇄 및 발행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광고 게재 및 지면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광고 게재 신청을 받아 지면을 배정하는 소식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특정 지면 배정이나 게재 계약이 완료되어 진행 중인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의 계약 게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u>규격과 발행 부수는</u>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① ----- ----- <u>규격은</u> ----- -----.
<u><신 설></u>	② <u>소식지의 종이 지면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정하되, 「주민등록법」에 따른 중구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수요자 신청에 의한 배부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우선하여 배부한다.</u>
제6조(광고의 게재) ① <u>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수 있다.</u>	제6조(광고의 게재) ① <u>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u>
②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광고 중 공익광고, 구정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고 면적은 소식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한다.</u>

<신 설>

제6조의2(광고료의 감면) 구청장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
고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가 공익 목적으로 게재하는
광고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소
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광고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공익
단체의 광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광고